

# Uruguay Round 妥結과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송 종 국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76-'80 서강대학교 경제학과(학사)
- '80-'82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석사)
- '83-'85 KAIST부설 해양연구소 연구원
- '85-'90 미국 Texas A&M대학교(박사)
- '91-'92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과 강사
- '91-'92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 '92-현재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 '90-현재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 1. 과학기술 국제질서의 변화

우루과이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경제·무역질서의 역사적 변천과 그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관련 국제질서의 큰 변동의 원인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동서냉전의 국제질서를 리드해 온 미국과 소련은 정부의 최우선 기술개발 정책과제를 군사·우주분야의 기술경쟁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서독, 일본 등과 NIES등의 현명한 후발자(Smart Follower)들이 미국이 개발한 기초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업화를 하면서 세계무역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게 되자 미국은 점차 선발자(Technology Leader)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군사·우주등 국가주도로 개발된 공공기술의 상업화(spin off)에 정책적 초점을 두게 되었으며, 민간기술개발에 정부의 공공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상업기술경쟁력 약화와 이로인해 초래된 무역경쟁력의 약화는 무역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왔으며, 미국의 산업·경제가 심각히 침체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전환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서냉전의 국제질서를 유지해온 소련과 동구국가의 체재붕괴로 세계질서는 경제력 즉 기술력이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일한 국

제질서 선도국가로서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에 의한 국면전환이 요구되었다.

개발도상국 정부의 강력한 기술개발지원의 성공은 미국 및 선진국들의 경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국제무역·경제질서의 환경변화와 국제질서의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움직임은 우루과이협정의 타결로 그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우루과이협정의 혜택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단기적으로 선진국들 보다 개발도상국가들과 후진국의 산업·경제발달에 큰 제약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정부의 과학기술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이 우루과이협정에서는 심각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될 이러한 국제무역·경제질서의 흐름은 환경협정(Green Round), 기술협정(Technology Round)으로 이어져 그 제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루과이협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루과이협정의 타결로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정책이 다른 산업지원정책보다도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으며, 오히려 우루과이협정타결을 우리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기술개발관계 보조금의 개념정의에 대해 WTO설립 후 18개월 이내에 다시 검토·논의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과 개도국에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루과이협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과학기술지원제도에 대한 제약규정의 내용과 각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 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우루과이협정의 내용

우루과이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지원 및 과학기술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UR협정문의 관련 각 조항과 그 배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다음은 우루과이

협정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2.1 우루과이협정에서 보조금(subsidy)의 정의

-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한 다음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financial contribution)이 있는 경우
  -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이전(무상양여금(grant), 자금대출(loans), 지분참여(equity infusion)이나 잠재적인 자금이전 혹은 채무부담의 가능성(대출보증(loan guarantees))이 있는 지원
  - 면제된 정부의 수입(조세감면 등 재정적 인센티브)
  - 정부가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
  - 정부가 자금공여기관 및 민간에 상기 3가지의 기능을 위임 혹은 감독하며, 그 기관의 활동이 정부의 활동과 다르지 않은 경우
- 혹은 GATT 1994 일반협정 제 16장의 견지에서 소득 혹은 가격의 지원이 있는 경우
- 그리고 상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주어진 경우이며
- 上記의 정의된 보조금이 제2조의 특정성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정 제2부의 금지 보조금, 제3부의 제소(상계)가능 보조금, 제5부의 상계 조치에 적용된다.

### 2.2 특정성(specificity)

- 보조금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특정하다는 것은,
  - 보조금 공여당국이나 관련법률이 보조금 지급을 특정 기업에 한해 명백히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단 보조금의 수혜대상과 규모를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 구비하고 법령, 규정, 기타 공식문서에 명시되는 경우는 예외). 여기서 객관성이란 특성에 있어 경제적이고 적용에 있어 공평한 것, 예를 들면 고용자의 수나 기업의 규모등을 말함
  - 기타 제한된 수의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프

로그랩, 보조금을 특정기업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많은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당국의 재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

- 지정된 지역에 제한된 기업에게 부여되는 보조금도 특정성이 있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율의 결정이나 변경은 특정성에서 제외

## 2.3 금지된 보조금

### 1) 금지(prohibition)

- 농산물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보조금이 자체 혹은 다른 요인들의 하나로써 수출성과와 관련하는 다음의 경우는 금지된다.
  - 정부가 수출성과에 대해 기업이나 산업에 주는 직접 보조금
  - 수출 장려금 형태의 외화현금보유
  - 국내선적보다 유리한 수출선적의 국내 운송 화물료
  - 국내생산보다 유리하게 수출상품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수입품 혹은 국내생산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수출과 관련하여 기업의 직접세나 사회보장부담금의 전액 혹은 일부감면, 감면, 환급 혹은 유예하는 것
  - 국내소비용 생산 이상으로 수출 혹은 수출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직접세 과표산정에서의 특별공제 허용
  - 국내소비용 동종품목 이상으로 수출상품의 생산 혹은 유통과 관련한 간접세의 공제나 환급
  - 국내소비용 동종품목 이상으로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제화 혹은 용역에 대한 전단계누적간접세의 공제·환급·유예(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위의 규정이 적용됨)
  -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수입재에 부과된 수입과징금 이상의 환급
  - 정부(혹은 정부관할의 기관)의 수출신용보증제도 혹은 보험, 생산비 증가에 대비한 보험 및 보증제도, 환리스크 보증제도의 요율이 장기

운용비용이나 손실보전에 부족한 경우

- 실제의 조달비용보다 낮은 정부의 수출신용공여
- GATT 1994년 제16장에 의한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는 공공계정으로 부타의 기타 지출
- 수입제품 대신에 국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 2.4 提訴可能 補助金(Actionable Subsidies)

### ○ 무역영향이란

- 상기 UR보조금에 속하는 보조금의 사용이 협정체약국의 국내산업에 손해를 주거나
- 직간접적으로 협정체약국에 돌아갈 혜택을 없애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 협정체약국들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
- 심각한 침해란
  - 한 제품의 총가격보조가(최근 12개월 간 물품 판매가액) 5%를 초과하는 경우
  - 기업의 운용비용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장기적 해결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비정기적 일회성 보조는 제외함)
  - 직접적인 정부채무의 면제나 그 상환을 위한 보조금

### ○ 기타

- 다른 협정체약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대체 혹은 방해하는 보조금
- 제3의 시장에서 타협정체약국의 수출을 대체 혹은 방해하는 보조금(매우 sensitive한 내용으로 피보조물의 시장점유율의 증가, 보조금이 없는 경우 감소하였을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을 불변하게 하거나 느린속도로 감소하는 경우 포함)
- 타협정체약국의 제품가격과 비교하여 피보조물품이 동일시장에서 현저한 가격절하를 초래하거나, 가격인상 억제나 가격하락 또는 판매값소를 초래하는 보조금
- 피보조일차산품 혹은 상품의 지난 3년간의 평균 세계시장점유율에 비해서 시장점유율이 보조금지급기간 동안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는 경우의 보조금

○심각한 침해의 예외

- 이의제기 협정체약국으로부터 제3의 시장으로의 수출 혹은 수입의 금지나 제약
- 수입국이 비상업적인 이유에 따라 이의제기 협정체약국에서 다른 협정체약국으로 수입제한
- 제품의 가격, 품질, 수량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재해, 파업, 운송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이의제기 협상국의 수출에 대한 침해
- 이의제기 협정체약국에 대한 수출제한
- 이의제기 협정체약국에 대한 자발적인 수출의 감축
- 수입국의 표준과 규제의 요건형성의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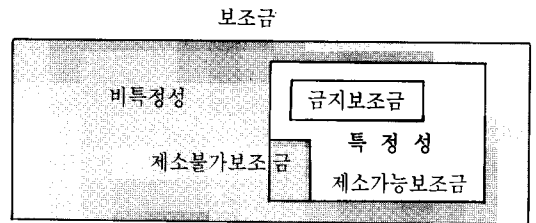
2.5 提訴可能 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

○제소불가 보조금의 정의

-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 下記 조건을 충족한 경우
- 기업 혹은 기업과 계약에 의한 고등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보조(단 WTO 창설 이후 18개월 이내에 본규정의 필요한 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주의 깊은 검토 필요)
- 75%이하의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 50%이하의 경쟁전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ies : 산업연구결과의 새롭고 개선 및 개량된 제품, 공정, 용역에 대한 계획, 청사진, 고안화)에 대한 개별 프로젝트의 비용
- 비용은 인적비용, 실험기자재, 장비, 대지 및 건물비용,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 구입, 연구간접비용, 기타 연구활동비용
-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기초연구에는 본규정이 적용안됨.
- 협정체약국 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으로서 지역개발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 따르며 경제행정적 구분이 되는 연속된 지역으로 3년간 전국평균치에서 GDP가 85%미만 혹은 실업률이 110%는 되어야 함.
- 환경규제를 위한 일회적 비반복적 설비 보조금,

적용비용의 20%이하

- 이상의 우루과이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 조항에서의 보조금, 특정성, 제소가능 보조금, 제소불가 보조금에 대한 개념을 아래 그림으로 간략히 요약할 수 있음. 제소가능 보조금이나 금지보조금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이 있고 동시에 제소가능 및 금지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물론 예외적으로 연구개발보조금과 같이 특정성이 있어도 허용되는 보조금도 있음.



3. 우루과이협정과 우리나라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검토

3.1 연구개발에 관한 허용보조금

우루과이협정문에서 연구개발 보조금에 관한 언급은 제소불가 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을 규정한 항목에서 언급되어 있다. 이 조항은 WTO설립 협정 발효이후 18개월 이전에 회원국의 경험과 다른 국제기구의 연구에 따라 규정의 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의 수정과 보다 상세한 규정의 추가가 따를 것이고 따라야 본 규정의 적용에 혼란이 줄어들 것이다.

본 조항의 핵심내용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에서 기업 혹은 기업과 계약에 의한 고등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대한 보조는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한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인 경우 개별 project비용에서 75%, 산업연구결과의 새로운 개선 및 개량된 제품·공정, 용역에 대한 계획, 청사진, 고안등 경쟁전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ies)은 프로젝트 비용의 50% 이내에서,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모두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협정체약국 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으로서 지역개발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 따르고 경제·행정적 구분이 되는 연속된 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용어해석을 좀더 정확히 해 보면,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자금조성에 기여한 자금공여기관, 상기 3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의 위임 혹은 감독을 수행하도록 한 민간기관 및 그 기관의 활동이 정부의 활동과 다르지 않은 경우를 포괄함.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투자기관(한국통신, 한국전력)등이 특정연구개발 사업이나 통신기술 개발진흥기금 등 각종 기술개발진흥기금에 출연할 경우 정부의 보조금으로 간주해야할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로 간주해야할지 그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본 조항의 연구개발 보조금이란 2장의 보조금 정의 중에서 무상양여나 출연에 해당하며 특정성이 있어도 무방함. 정부의 보조금이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원국들의 그러한 보조금 제공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함.

-이는 보조금을 회원국이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된 보조금에 대한 제약 여부(금지 혹은, 제소가능) 여부는 우루과이협정의 각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됨.

3) 비용이란 개별프로젝트 베이스의 총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은 연구활동에 고용된 인력비용, 실험기자재·장비·대지 및 건물비용,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 구입비용, 연구활동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간접비용, 기타 연구활동비용에 한정함.

4) 산업연구와 경쟁전개발활동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상기한 비용의 총액이 두 범주의 허용한계의 단순산술평균을 넘어서는 않됨.

-이 규정의 적용은 우리나라의 특정연구개발 사업이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과제가 연구개발의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할 규정임.

-또한 연구프로젝트가 여러해 동안 지속될 경우 프로젝트의 존속기간 동안 발생된 총지출 비용과 보조금을 근거로 지원의 수준을 설정함.

5) 연구활동이란 기업과 계약에 의거한 것을 말함. 단 상업적·산업적인 목적외에 단순한 과학적 기술적인 지식의 창조와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를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정부의 보조금지급이 모두 허용됨.

6) 산업연구라함은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의 제품, 공정, 서비스의 현저한 개선에 유용할 것이라는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 계획된 조사나 중요한 연구임.

7) 경쟁전 개발활동이라 함은 상업적 용도가 아닌 prototype을 포함하여 산업연구 결과를 판매나 사용 목적으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새롭게, 수정 및 개선하는 계획·설계 또는 도안화 하는 것. 또한 제품, 공정, 서비스 代案의 개념적 공식과 디자인 그리고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로 전환되거나 사용될 수 없는 시험적 계획(pilot project)들을 포함함.

### 3.2 특정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 촉진법)

이상의 연구개발 허용보조금에 관한 규정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특정연구개발사업(G7사업 포함)의 연구과제 내용과 연구자금지원의 규모 등을 분류하여 우루과이협정의 보조금 제약규정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 볼 수 있다.

1992년 선도기술연구 개발사업(G7사업)의 11개 사업에서 정부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초고집적반도체 연구는 40.5%, 고선명TV 연구는 40%, 신의약·신농약 연구는 74.2%, 첨단생산시스템연구 49.0%, 첨단소재연구 65.8%, 차세대자동차연구 45.6%, 신기능 생물소재연구 62.3%, 환경공학연구 58.4%, 신에너지연구는 86.0%, 차세대원자로 연구 100%, 광대역 ISDN 41.2% 등이다(신에너지 연구사업과 차세대 원자로 연구사업은 한전의 출연금을, 광대역 ISDN의 경우 한국통신의

연구비 부담을 정부부담분으로 포함했음).

앞에서 분석한 우루과이협정 연구개발 보조금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연구와 경쟁전단계의 연구로 구분하여 정부 보조금지급 한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연구개발사업지침에 의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된 11개사업의 개별 프로젝트를 우루과이협정에서 분류한 두가지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 우루과이협정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있을 것이지만, 상업적·산업적인 목적으로 적용 활용하기 위한 시제품개발 프로젝트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B-ISDN)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기간이 1992년 12월부터 1995년 12월이고 총연구비용은 5,790억원으로 되어 있고, 총연구비의 15.8%인 910억원을 정부가 출연하고 나머지를 한국통신 2,850억원, 민간기업 2,055억원씩 분담할 계획이다. 연구비분담비율의 한계수준 보다도 이 사업의 경우 2001년까지 4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ATM교환기 개발·통신단말기개발 등 중과제의 내용이 상업적 제품개발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해소될 여지가 있다.

차세대 원자로 연구사업의 경우를 예로들면 연구기간이 1992년 12월에서 2001년 12월로 총 2,380억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고 정부가 20.9%인 497억원을 부담하고 한국전력이 79.1%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5개의 중과제 연구사업의 총괄책임이 한국전력과 산하 안전기술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전력을 정부기관으로 보던 민간기업으로 간주하던간에 우루과이 보조금허용 수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과제 중의 하나인 사업관리 총괄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100%여서 정부보조금을 다른 중과제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마찰의 여지를 줄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특정연구개발사업과제들의 프로젝트별 연구내용과 목표를 보면 기초연구, 산업연구, 시제품 제작 등 혹은 경쟁전개발활동의 단계를 넘는 연구사업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용

부담 허용비율의 적용에 신중이 요구되며 제품 개발 과제의 경우 지원허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과제가 연구개발의 여러 단계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보조금의 한계비율을 산정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산업연구와 경쟁전개발활동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상기한 비용의 총액이 두 연구개발보조금이 허용하는 수준의 단순산술평균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연구프로젝트가 여러해 동안 지속될 경우 프로젝트가 존속한 기간동안의 총지출 비용과 보조금을 근거로 허용수준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3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공업발전법 제13조)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 과제, 수출촉진, 수입대체 또는 관련산업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기술 과제,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필요기술 과제, 유망 중소기업 기술지원 과제, 선도적 핵심산업기술 과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수행관련 기술조사 또는 기술평가 과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지원의 범위와 기준은 참여 기업수 및 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총개발사업비의 2/3이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정부주도의 과제인 경우 100%까지 지원한다. 즉,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거나 국립 및 정부출연연구소, 산업기술 연구조합, 대학이며, 중소기업이 2이상이고 참여기업의 2/3가 넘는 경우 총사업비의 2/3까지 지원하며, 그외는 총사업비의 1/2까지 지급한다. 대기업이 주관기관이고 중소기업이 2 이상이고 참여기업의 2/3가 넘는 경우 총사업비의 1/2, 그외는 2/5까지 지원한다.

이들 사업의 과제별 기술개발비 지출실적('87년-'92년)을 보면, 공통애로기술 및 요소기술개발 과제는 정부부담이 1,722억원(57.0%) 민간부담이 1,301(43.0%)억원, 첨단산업기술개발 과제는 정부 531억원(20.2%), 민간 2,098억원(79.8%), 중소기업

기술지원과제는 정부 102억원(73.9%) 민간 36억원(26.1%),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 대일의존 핵심기술개발사업 정부 58억원(52.7%), 민간 52억원(47.2%), 기술개발기획평가는 정부가 26억원(100%)을 지출하고 있다.

공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은 연구결과와 평가가 불량한 경우 환수조치를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각 과제의 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이 과제의 내용에 따라 상기 규정의 지원허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과제내용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의 절감이 필요하다.

### 3.4 기술혁신과 관련한 기타 지원제도의 제약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조세·금융지원 제도에 의한 대부분의 보조금들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적인 혜택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서 금지되거나 제소가능하여 상계조치를 받을 보조금도 있다고 본다. 보조금의 종류에 따른 분석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 1) 제소가능성이 없는 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근거법령
1. 기술개발준비금	기술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 투자 등 기술혁신 관련 투자계획 금액을 투자 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기술개발 촉진법 제3, 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기업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3.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또는 특별상각	기업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세액 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일정율 특별 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4.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특정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 감면(관세법 제28조 제5항,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3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민법 제32조)
5.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와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연구용의 견본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기술 개발촉진법 제3조 제3항)
6.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제128조 제2항, 제184조 제2항, 제234조 제13항,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7.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국내 기업에 기술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해 주거나 특정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기술용역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민법 및 기타 특별법)
8. 기술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국내 기술개발의 이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비법 계약에 의한 제공으로 발생 하는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
9. 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출원비용 보조지원	(특허청 발명 권장사업추진 요령) 외국에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당해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정부예산)

2) 제소가능한 지원제도

아래의 지원제도는 UR협정의 특정성 규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즉, 기업의 운용비용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장기적 해결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비정기적 일회성 보조는 제외함), 기타 제한된 수의 특정기업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 특정기업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기업이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당국의 재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 특정지역의 기업에만 수혜되는 보조금에 해당하고 제소가능성이 있는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술개발 금융지원의 경우 시중금리와와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수혜자인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 볼때 연구개발지원의 경우 허용보조금 한도의 초과 그리고 개발 및 기업화의 지원에 있어서는 아래의 요건에 위배될 수 있다.

- 상기 UR보조금에 속하는 보조금의 사용이 협정체약국의 국내산업에 손해를 주거나
- 직간접적으로 협정체약국에 돌아갈 혜택을 없애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 협정체약국들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아래의 경우
- 한 제품의 총가격보조가(최근 12개월 간 물품

- 판매가액) 5%를 초과하는 경우
- 기업의 운용비용의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장기적 해결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비정기적 일회성 보조는 제외함)
- 직접적인 정부채무의 면제나 그 상환을 위한 보조금
- 기 타
- 타협정체약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대체 혹은 방해하는 보조금
- 제3의 시장에서 타협정체약국의 수출을 대체 혹은 방해하는 보조금(매우 sensitive한 내용으로 피보조물의 시장점유율의 증가, 보조금이 없는 경우 감소하였을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을 불변하게 하거나 느린속도로 감소하는 경우 포함)
- 타협정체약국의 제품가격과 비교하여 피보조물품이 동일시장에서 현저한 가격절하를 초래하거나, 가격인상 억제나 가격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보조금
- 피보조 일차산품 혹은 상품의 지난 3년간의 평균 세계시장점유율에 비해서 시장점유율이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나는 경우의 보조금

지원제도 및 대책	지원내용 및 근거법령
10. 기술개발선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기술개발 선도 물품으로서 수출 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시장진출 초기단계에 일정 기간 동안 특별소비세 감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대책 : 수출전략상 내수의 기반 확대가 필요한 특정 품목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없애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타당함.	
11.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자산 투자 세액 공제 또는 특별상각	「특허받은 국내 기술개발 성과·기술개발 촉진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및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고안·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 신기술제품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 즉 국내개발 신기술의 최초 기업화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거나 취득 가액의 일정율을 특별상각(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대책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없애는 것이 좋겠음.	



<p>12. 기술용역 사업 등에 대한 소득 공제</p> <p>대책 : 기술용역사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특정산업에 해당하고 개시 후 5년이란 기간이 일시적인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특정성에 제외되기 어려울 것 같음.</p>	<p>기술용역 사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 개시후 5년간 당해 사업소득의 일정율을 소득금액에서 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p>
<p>13.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p> <p>대책 : 기술집약형이라는 특정성이 문제가 되며 일정기간에 대해서 일시적인 보조금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명시가 필요함</p>	<p>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 초기에 일정기간 동안 제반 조세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p>
<p>14.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의 투·융자 손실 준비금 손금 산입 조세특례</p> <p>대책 : 신기술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요함</p>	<p>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이 신기술 사업자 등에 투·융자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지원(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p>
<p>15. 우수 발명 시작품 제작 보조지원</p> <p>대책 : 우수발명품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작품제작 비용의 지원허용한도를 줄여야 함</p>	<p>(특허청 발명 권장사업추진 요령, 특허법, 실용신안법)</p> <p>우수발명의 시작품 제작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지원(정부예산)</p>
<p>16.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지원</p> <p>대책 : 신기술 사업지원 금융의 금리와 시중금리간의 차이와 신기술사업 지원대상 기준을 객관적으로 명시</p>	<p>(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p> <p>한국기술개발·한국기술금융·한국기술진흥·한국개발투자</p>

#### 4. 우리나라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우루과이협정의 타결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제도 중에서도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이 가장 유리하고 덜 제약적인 지원제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우루과이협정타결을 우리 산업·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우루과이협정문의 기술혁신 지원 보조금의 내용이 불분명한 것이 많아 기술 개발관계 보조금의 개념정의에 대해 WTO설립 후 18개월 이내 다시 검토·논의를 하게되므로 이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우루과이협정과 관련한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에 따른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허용보조금을 시행전에 보조금위원회에 매년 통보할 경우 보조금이나 아니냐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보조금일 경우 허용여부를, 허용 보조금의 경우 어떻게 통보하는 것이 이의제기를 받지 않고 유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루과이협정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협정문의 제약규정에 따른 지원제도의 내용 개선 및 지원방법의 변경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우루과이 협정이 발효되어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에 기존의 지원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최단기적으로 WTO의 설치 후 연구개발과 관련한 규정의 개선을 위한 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기술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인 GR, TR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루과이협정의 기술개발관련 보조금 및 상계 조치의 중요한 내용과 앞으로의 제도개선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성격변화에 따른 보조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조심스럽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투자기관이 민영화될 경우는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한계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루과이협정에서 특정성이란 사실상 명확하지 않아 그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즉 특정산업, 특정기업에서 특정의 범위와 내용,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서 차별의 기준 등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실제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와 분쟁해결위원회의 개별 제소사안에 따른 판례에 의존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기업과의 계약 베이스에서 기업연구소는 제외되는지의 여부와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에 100%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연구기관에 국공립연구기관과 출연 연구기관외에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마련하여 검토 위원회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 과제들의 프로젝트별 연구내용과 목표를 보면 기초연구, 산업연구, 시제품 제작등 경쟁전 단계의 활동, 혹은 제품의 개발까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용부담 허용비용의 적용에 신중이 요구되며 제품개발과제의 경우 지원허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광대역종합 정보통신망의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2001년까지 4단계의 연구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ATM교환기개발·통신단말기 개발 등 중과제의 내용이 상업적 제품개발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제소될 여지가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처리규정에는 정부보조 연구비용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는 규정의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지급 비율과 수행 프로젝트의 내용이 기초산업기술 경쟁전개발활동 등 어떤 분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산업연구와 경쟁전개발활동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연구개발비용의 총액에서 두 보조금의 허용 수준의 단순산술 평균을 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연구비 보조외에도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조세·금융지원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특정성이 없는 허용보조금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몇가지 지원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기술개발 금융지원의 경우 시중금리와와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수혜자인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 볼때 연구개발지원의 경우 허용보조금한도의 초과 그리고 개발 및 기업화의 지원에 있어서는 특정성과 제소요건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자금지원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개도국의 유예기간동안 당해 보조금을 강화할 수는 없지만 유예기간까지 지속하느냐 점진적으로 개선하느냐는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GR과 TR의 파고가 이미 미국을 비롯한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술혁신지원 제도를 더욱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들 선진국의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불이익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우루과이 협정에서 보조금의 유형과 내용에 대한 분석에 그쳤으나 상계 조치, 앞으로 보조 기구, 통보와 감시,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분석도 할 예정이며, 우루과이 협정 타결에 따른 기술혁신과 연계된 기타 산업 및 무역지원제도의 영향도 검토하고자 한다.